



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폐지 및 제정 고시

2012년 2월 22일

기술표준원장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(국가교정제도의 확립) 및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‘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’을 폐지 및 제정고시 합니다.

○ 폐지 및 제정문서

구 분	내 용	사 유
폐 지	KOLAS-R-008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	KOLAS 운영문서 관리절차에 따라 가이드 문서로 제정
제 정	KOLAS-G-020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	

붙임 : KOLAS-G-020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1부.

○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고시)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KOLAS-R-008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(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-0061호, 2012.2.17)은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